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

전부개정 2025. 3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”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“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유성구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재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322(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93번지)에 둔다.

제4조(목적사업)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·지원 사업
2.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
3.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
4.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지원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
6. 주민·후원기관·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사업
7. 재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
8.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9. 문화예술 창작·보급·활동 등의 추진 및 지원 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문화예술단체 등의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
11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모·정책자문 및 교육·조사연구 사업
12. 국내·외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사업
13.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사업
14. 사회복지 또는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
15.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 할 수 있다.

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고,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원칙) ① 재단 목적사업의 제공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재단의 목적사업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근무처, 성별, 연령 기타 재단과의 특수관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여 제공할 수 없다.

제2장 임 원

제7조(임원의 종류와 수)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 7인 이상 13인 이하(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인

②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명) ① 임원은 공개경쟁 모집방식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,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단업무(사회복지 및 문화예술)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고, 당연직 감사 1인은 재단업무(사회복지 또는 문회예술)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임원의 임명이 있을 때에는 임명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임원이 재직 중 또는 임명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, 해당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
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3.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①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령, 정관, 규정의 위반 등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5.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제13조(임원의 보수) ① 재단의 상근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
②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(사회복지업무 소관 국장)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 기피로 인하여 이사회가 소집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.

제3장 이 사 회

제15조(이사회 구성)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6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6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재산의 취득·처분·관리에 관한 사항
8.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
9. 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10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1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12. 법령·조례·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3. 그 밖에 이사장,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의결권의 제한)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임면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

제19조(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없고,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
제20조(회의록)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21조(재산)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성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지정된 재산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고,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내역과 평가액은 별표1과 같다.

제22조(재산의 관리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23조(회계연도 및 원칙)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르고,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원칙을 따른다.

제24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유성구청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5조(사업실적 및 결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성구청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단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(기부금)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잉여금의 처리) 재단의 매 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세입으로 처리한다.

제28조(감사의 실시) 감사는 재단의 업무, 재산상황 및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 무 처

제29조(사무처)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의 기구는 별표2와 같이 하고, 정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별표3과 같이 하며,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별표4와 같이 한다.

③ 사무처 상근임직원의 채용, 인사,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0조(겸직제한) 재단의 상근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상근임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제31조(직원의 보수) 재단의 상근직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2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성구청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성구청장과 협의한 후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4조(잔여재산의 처리)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성구에 귀속한다.

제35조(공고의 방법) 재단의 설립 ·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유성구 및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제36조(운영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7조(적용 및 준용)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,「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」,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등 관련 법령과 정부 관련 부처 및 유성구의 지침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<별표 1>

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(제21조제4항 관련)

재산종류	구 분	내 역	평가액(원)	비고
동 산	2013년	유성구 출연금	700,000,000	
동 산	2014년	유성구 출연금	1,300,000,000	
동 산	2015년	유성구 출연금	1,000,000,000	
계			3,000,000,000	

<별표 2>

기 구 표(제29조제2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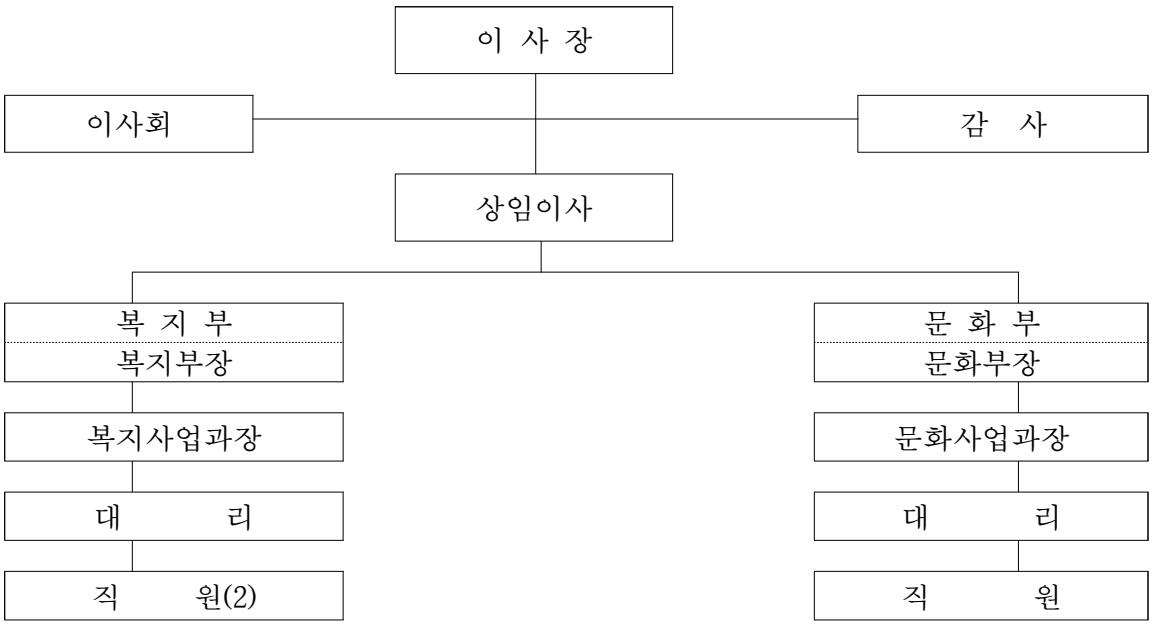

<별표 3>

정 원 표(제29조제2항 관련)

구 분	계	상임이사	부 장	사업과장	대 리	직 원
계	10명	1명	2명	2명	2명	3명

〈별표 4〉

직위 및 직급(제29조제2항 관련)

직 위	직 급
상임이사	임원
복지·문화부장	1급
복지·문화사업과장	2급
대 리	3급
직 원	4급